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222호의2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·물건 열람·등사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3쪽 중 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
	사건과의 관계	[]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[]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변호사 ※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친족· 형제자매·변호사의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	

사 건	사건번호 년 형제 호	피고인 외 명
	죄 명	

신청사유	[]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[] 피해자 등의 해당 사건 진술권 보장 (관련 사건번호 및 사건 내용 :)
신청내용	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·물건의 열람·등사

「형사소송법」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·등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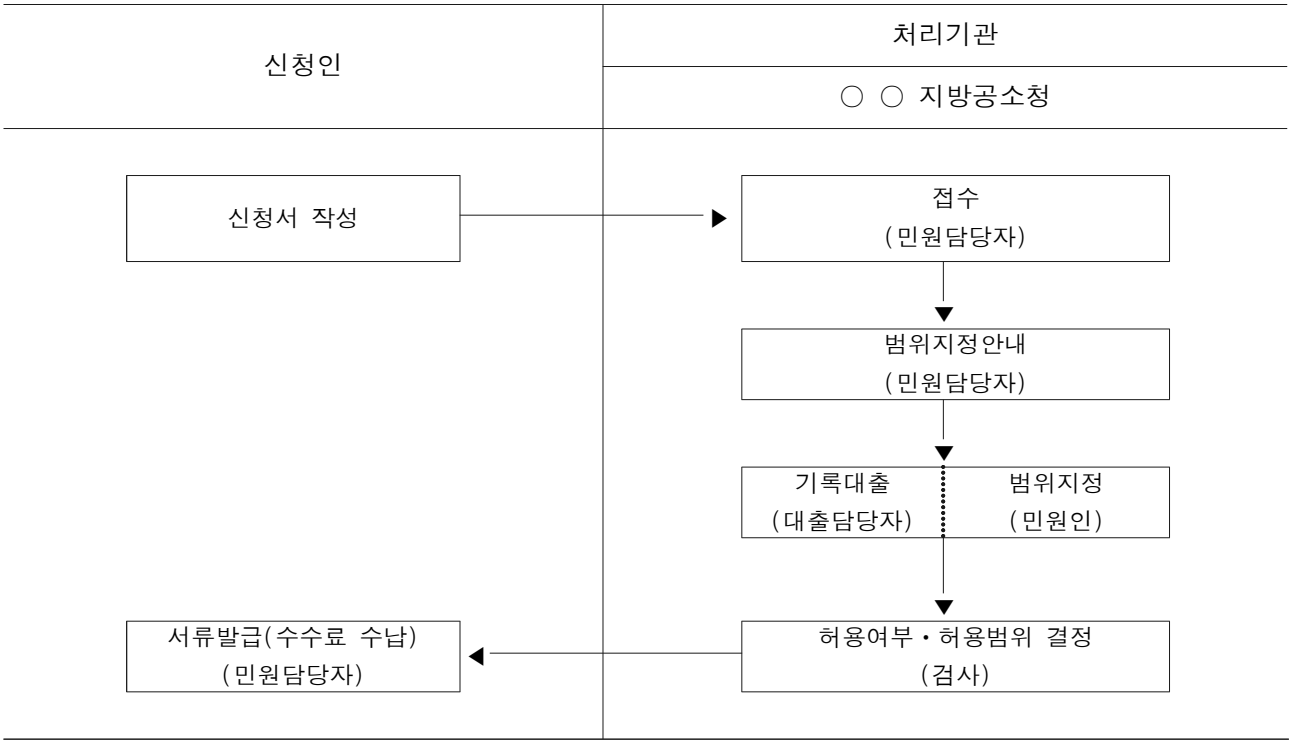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공소청장 귀하

검사 결정	허 가	불 허 가	사용 목적 제한	조건부 허가
	㊞	㊞	㊞	㊞

210㎜ × 297㎜(백상지 (80g/㎡))

처 리 절 차


신청인
처리기관
○ ○ 지방공소청
신청서 작성
접수
(민원담당자)
범위지정안내
(민원담당자)
기록대출
(대출담당자)
범위지정
(민원인)
허용여부・허용범위 결정
(검사)
서류발급(수수료 수납)
(민원담당자)

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내용

순번	서류・물건의 목록	허가 여부			비고
		허 가	불허가	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부허가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
※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비고란에 기재